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 . .<br>(제 회)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구윤철<br>(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농어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는 조합원을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으로 정하고, 서민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12. 12. ~ 12.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2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②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합을 말한다.

④ 조합등은 국세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가 출자 당시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1) 또는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출자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출자자의 출자연도(출자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조합등에 통보해야 한다.

⑥ 출자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합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83조의3제1항 중 “제82조의5”를 “제82조의5제1항”으로, “같은 조”를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거주자가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8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등은 국세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가입 당시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1) 또는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가입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

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조합등에 통보해야 한다.

⑤ 가입자는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합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93조의10제1항 중 “가입 신청 또는”을 “가입 신청, 출자 신청 또는”으로, “가입 신청일”을 “가입 신청일, 출자 신청일”로, “제81조제15항제1호 본문”을 “제81조제15항제1호 본문, 제82조의5제3항, 제83조의3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u>비과세 요건 등</u>) 법 제88조의5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u>”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p> <p>1. 「<u>농업협동조합법</u>」에 의한 <u>조합</u></p> <p>2. 「<u>수산업협동조합법</u>」에 의한 <u>수산업협동조합</u></p> <p>3. 「<u>산림조합법</u>」에 의한 <u>조합</u></p> <p>4. 「<u>신용협동조합법</u>」에 의한 <u>신용협동조합</u></p> <p>5. 「<u>새마을금고법</u>」에 의한 <u>금고</u></p> | <p>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u>비과세 요건 등</u>) ① 법 제8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u>”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p> <p>1. 「<u>농업협동조합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조합</u></p> <p>2. 「<u>수산업협동조합법</u>」 제2조제4호에 따른 <u>조합</u></p> <p>3. 「<u>산림조합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조합</u></p> <p>4. 「<u>신용협동조합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신용협동조합</u></p> <p>5. 「<u>새마을금고법</u>」 제2조제1항에 따른 <u>금고</u></p> <p>②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가목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u>”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p> |

호까지의 조합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  
목에 따른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  
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  
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 등(이하 이 조  
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등은 국세청장에게 제3  
항에 따른 거주자(이하 이 조에  
서 “출자자”라 한다)가 출자 당  
시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  
목1) 또는 2)의 요건을 갖추었  
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출자자가 해당 요건  
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출자자의 출자연도(출자  
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  
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  
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  
월 말일까지 해당 조합등에 통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①법 제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 제8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신 설>

보해야 한다.

⑥ 출자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합등에 통보한 내용에  
의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  
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조합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  
해야 한다.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①-----

--- 제82조의5제1항 -----

-----같은  
항-----

②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  
목에 따른 거주자가 법 제89조  
의3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  
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신 설>

<신 설>

<신 설>

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8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등은 국세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가입 당시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 목1) 또는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가입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조합등에 통보해야 한다.

⑤ 가입자는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합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법 제91조의24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저축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에 가입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자가 해당 저축등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제81조제15항제1호 본문, 제93조의4제1항제1호 본문, 제93조의6제2항제1호, 제93조의7제3항제1호 또는 제93조의8제5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① -----  
-----  
-----  
-----  
-----  
--- 가입 신청, 출자 신청 또는  
-----  
가입 신청일, 출자 신청일 ----  
-----  
-----  
-----  
----- 제  
81조제15항제1호 본문, 제82조  
의5제3항, 제83조의3제2항----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
| 연 락 처       | (044) 215 - 4232 |